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3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4년 4월 9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22일
- 라. 상정일자: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 가. 제안이유
 - 전통시장 이용고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차요금 할인시간과 할인율을 책정하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전통시장을 이용한 차량에 대해 현행 '최초 90분 이내 주차요금의 30% 할인'을 '최초 2시간까지 50% 할인'으로 할인시간과 할인율을 확대하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에는 최초 2시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개정조례안은

- 전통시장 이용고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차요금 할인시간과 할인율을 책정하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별표1 비고 제11호 본문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주차요금 할인 대상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더불어 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을 추가하였으며, 주차요금 할인시간은 최초 “90분 이내” → “2시간 이내”로, 할인율을 “30%” → “50%”로 확대하였고,
- 또한 같은 호 본문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구매한 영수증 등을 제시할 시에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공영주차장만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공영주차장은 할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인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인근 주차장까지 확대해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같은 호 단서에서는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인 경우에는 최초 2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검토결과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상권이 더욱 활성화되고,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는 물론,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마트 선호현상 등으로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등의 고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등 이용고객의 주차요금 완화를 통해 전통시장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먼저, 안 별표1 비고 제11호 본문에서 확대된 할인율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서울시 타 자치구의 전통시장 주차요금 할인규정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의 50% 할인”을 적용하는 자치구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이보다 할인율이 높은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3개, “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3개, 시간제한 없이 “50% 할인” 1개 등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자치구들이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확대될 할인율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음은 신설된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영등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024년 6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대하여 “최초 2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해당 주차장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조성된 것으로, 해당 취지에 맞춰 전통시장등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다른 주차장 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더욱이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구매 금액에 따라 주차시간 단위로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감안할 때, 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전통시장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31 호
----------	---------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전통시장 이용고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차요금 할인시간과 할인율을 책정하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통시장을 이용한 차량에 대해 현행 '최초 90분 이내 주차요금의 30% 할인'을 '최초 2시간까지 50% 할인'으로 할인시간과 할인율을 확대하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에는 최초 2시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 별표 1 비고 제1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반영(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3. 7.~3. 27./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주차하고 전통시장등에서 발행한 주차권 등을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 2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내역

- 전통시장 이용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시간 및 할인을 확대하여 인한 주차요금 세입 감소: 연간 56,524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3. 미첨부 사유

- 전통시장 이용고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추계: 연간 1억원 미만

공영주차장 명	연간 주차요금 세입(2.5시간 이용 시)		연간 세입감소 (a-b)
	현행(a) (90분까지 30% 할인)	개정안(b) (2시간까지 50% 할인, 시설현대화: 2시간까지 면제)	
합 계	112,729천원	56,205천원	56,524천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4,920원*30대*365일 =53,874천원	1,200원*30대*365일 =13,140천원	40,734천원
영등포동제1	3,690원*10대*365일 =13,468천원	2,700원*10대*365일 =9,855천원	3,613천원
영등포동제2	2,460원*10대*365일 =8,979천원	1,800원*10대*365일 =6,570천원	2,409천원
중마루공원 앞(노상)	6,150원*10대*300일 =18,450천원	4,500원*10대*300일 =13,500천원	4,950천원
대림2동	2,460원*20대*365일 =17,958천원	1,800원*20대*365일 =13,140천원	4,818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교통국 주차문화과 안형복
연 락 처	02-2670-3899